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

2000. 12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0년 11월 29일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11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18일(제182회 정례회 제 3차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(사회복지과장 김동윤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,
- 이의 관리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은 국고보조금, 도의 출연금, 이자수입,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등으로 함
-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,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, 기타 자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등으로 함
-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 · 운용하되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, 국 ·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을 함

-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자활공동체, 자활사업실시기관, 시·군등에 지원함
-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5년 거치후 5년균등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연 5%로 함
-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 보장 담당사무관으로 함
- 기금의 결산보고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함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범수)

-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취지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
-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을 지정하는 것과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은 수정 보완을 가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조례의 목적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
- 일부 조문상 미비한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과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나. 수정주요골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“목적”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기금설치 · 운용의 목적을 명확히 함.(제1조)
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“기금계좌를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”으로 함.(제4조)
- 기금결산보고에 있어서 “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”를 제출 토록 명시함.(제13조)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요지 :: 없음

9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첨부서류

- 가.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- 나. 신 · 구조문대비표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0.12.18
제 안 자 : 황태모의원

1. 수정이유

-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조례의 목적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
- 일부 조문상 미비한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과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“목적”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기금설치 · 운용의 목적을 명확히 함.(제1조)
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“기금계좌를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”으로 함.(제4조)
- 기금결산보고에 있어서 “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”를 제출 토록 명시함.(제13조)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
“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으로 한다.
- 안 제4조 2항중 “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”를
“기금계좌를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설치”로 한다.
- 안 제13조 제2항중 “기금결산보고서”를 “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”로 한다.

수정동의 신·구 대비표

원 안	수정동의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②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되,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	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②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설치 관리·운용하되,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제13조(결산및보고)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3조(결산및보고)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